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8. 9. 24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9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5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 ('98. 9. 24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홍 기

가. 개정이유

민선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 통합합 및 인력감축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함.

(안 제2조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19명

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6명

총 계 : 1,345명

○ 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현행 조례에서는 구분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, 하부행정기관인 동에 관한 정원만을 정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별도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통합관리하고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'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보건소와 동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통합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포구 현정원 1,543명중 12.82%에 해당하는 일반직 79명, 기능직 44명, 고용직 73명, 별정직 1명, 전문직 1명등 총 19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, 감축결과 정원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직권면직을 유예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는 등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국가시책상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구개편과 함께 지방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추후 우리구에서 감축될 198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감축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또한 감축정원에 대해서는 전직등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--

제출일자: 1998. 9. .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민선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「작지만 효율적인」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19명
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6명
- 총 계 : 1,345명

나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는 근거마련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별 첨

4. 참고사항

가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,069호)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1998.8.31대통령령제 15,875호)제21조
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협의 : 필요없음
- 라. 기타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319명
 - 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6명
- 총 계 : 1,345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구의 본청,의회사무국,보건소및 동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,1999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 인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한다.